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9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성원·박덕흠

박충권 • 이헌승 • 정동만

김상훈 • 이만희 • 최보윤

최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,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 또한,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양로지원,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과 수당 지급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,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자에게도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 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,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,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 신설 등).

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있다.

제7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

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7호에 따

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7조의4제3항 중 "제7조의3제4항"을 "제7조의3제5항"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8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- 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 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- 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7조의5"를 "제7조, 제7조의5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7조의5"를 "제7조, 제7조의5"로, "교육지원"을 "의료지원, 교육지원"으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	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
대한 진료 등) ① ~ ⑦ (생	대한 진료 등) ① ~ ⑦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
	또는 유족 중 배우자(「국가유
	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	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
	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
	말한다)는 보훈병원에서 진료
	한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
	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
	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
	<u>수 있다.</u>
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 ①・②	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
	경우에는 배우자(「국가유공자
	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	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
	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
	한다)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

### ③ • 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액·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

제7조의4(권리의 보호) ①·② 저 (생 략)

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 된 월 수당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 위소득"이라 한다)과 수당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
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과 같음)
<u>⑥</u>
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
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
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네7조의4(권리의 보호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③ 제7조의3제5항
④ (현행과 같음)
세8조의8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
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

제28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

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 금을 할인할 수 있다. 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 된 사람 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 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 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제28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) ① -----

는	모든	지원	( <u>제</u> 7	'조의	<u>15</u>	및 >	제7
조	의9에	따라	ユ	의	배우	자	또
는	자녀:	가 받	을	수	있는	・ ス	원
을	포함형	한다)을	을 ㅎ	가지	아니	]한	다.

### 1. ~ 5. (생략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<u>제7조의5</u> 및 제7조의9에 따라 <u>교육지원</u> 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 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 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 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<u>제7조, 제7조의5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
<u> 7조의5의</u>
료지원, 교육지원
,
③ ~ ⑥ (현행과 같음)